

#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광호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53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
발 의 자 : 이광호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김정환, 박기재, 박순규, 이준형,  
김기덕, 이광성, 최기찬, 김경우,  
이병도, 김용연, 이세열, 정진술,  
이승미, 이은주, 최정순, 이현찬,  
김동식 의원 (17명)

## 1. 제안 이유
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제29조에서는 장애 차별 금지와 장애인의 참여 환경 조성에 관해서 명시하고 있음.
-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‘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’로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.
- 또한, 잘못된 목적규정의 약칭 사용과 인용규정을 개정하여 시민이 입법 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,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.

## 2. 주요 내용

가. 목적규정의 약칭 사용을 개정함(안 제1조, 안 제2조).

나.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개정함(안 제12조제1호)

다. 잘못된 인용규정을 개정함(안 제12조제3호, 안 제22조제1항)

라.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개정함(안 제2조제5호, 안 제15조제3항, 안 제18조제1항제1호).

## 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공공기관  
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)」”를 “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다목 중 “법 시행령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밖에”를 “밖에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)과 같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사용가능”을 “사용 가능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호 중 “심신장애로 인하여”를 “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제10조제4항에”를 “제11조제4항을”로 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」”을 “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

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7조”를 “제18조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현행	개정안
<p>가.·나. (생략)</p> <p>다.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<u>법시행령</u>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</p> <p>라. 그 <u>밖에</u>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5. "빅데이터등"이란 서울시에 서 <u>사용가능한</u> 제1호와 제4호를 말한다.</p> <p>제12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심신장애로 인하여</u>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<u>제10조제4항에</u> 위반한 경우</p> <p>제15조(빅데이터등의 활용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민간영역의 빅데이터등은 <u>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</u></p>	<p>가.·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----- ----- ----- <u>같은 법시행령</u>-----</p> <p>라. 그 <u>밖에</u> 「<u>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'법'이라 한다)과 <u>같은</u> ---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 <u>사용가능</u>----- -----.</p> <p>제12조(위원의 위촉 해제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</u> 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제11조제4항을</u> -----</p> <p>제15조(빅데이터등의 활용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 「<u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</u></p>



현행	개정안
1.·2. (생략) ②·③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